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93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 의 자 : 안철수 · 김형동 · 김석기
김상훈 · 엄태영 · 김승수
최보운 · 김선교 · 이달희
최은석 · 김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은 제품이나 시설, 서비스 등이 일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 그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품 등의 품질을 유지·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함.

정부에서는 그간 유사·중복된 인증 통합,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 등의 방식으로 인증을 정비해 왔으나, 인증의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설 인증의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불필요한 신설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인증의 총량 관리) ① 위원회는 인증(규제 중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의 불필요한 증가를 방지하고 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구체적인 범위, 총량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인증의 총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4(인증의 총량 관리) ①</u> <u>위원회는 인증(규제 중 제품 ·</u> <u>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u> <u>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u> <u>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u> <u>하는 것을 말한다)의 불필요한</u> <u>증가를 방지하고 인증으로 인</u> <u>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u> <u>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u> <u>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u> <u>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구체</u> <u>적인 범위, 총량의 설정 및 관</u> <u>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한다.</u>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 다. 1. · 2. (생 략) <u><신 설></u> 3. ~ 7. (생 략) ② (생 략)	제24조(기능) ①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인증의 총량 설정 및 관</u> <u>리에 관한 사항</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